

공동 2014-08-05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

- 국립대를 중심으로

2014. 11.

공동 2014-08-05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

- 국립대를 중심으로

연구책임자 : 유흥림(단국대학교)

공동연구원 : 임동완(단국대학교)

성시경(단국대학교)

김돌의(태영회계법인)

연구보조원 : 윤성일(연세대학교 박사과정)



제 출 문

한국장학재단이사장 귀하

본 보고서를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가능성 검토 연구 -
국립대를 중심으로」의 연구 최종 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4. 11.

- 주관연구기관명 : 단국대학교 천안캠퍼스 산학협력단
- 연 구 기 간 : 2014. 05. ~ 2014. 11.
- 주관연구책임자 : 유흥림 (단국대학교)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정책연구과제 연구팀의 의견이며 한국장학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요 약

I. 서론

- 한국의 경제발전과 사회발전은 고등교육(higher education)의 발전을 갖고 왔고, 발전과정에서 내재된 대학재정 구조의 문제와 공공의 부족한 고등교육 투자는 ‘높은 등록금’으로 귀결되었고, 높은 등록금은 고등교육의 양적 확대를 통해 확보되었던 교육의 기회를 위협하는 상황
- 「고등교육법」 제11조제10항에 따라 대학에서 징수하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교육부는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시행 2013.3.23] [교육부령 제1호]이 있음.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은 등록금 책정과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규정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나
 - ① 계절학기에 등록하여 수강하는 경우 수업료 산정 규정과 징수방법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으며,
 - ② 초과학기 등록자에 대한 납부규정(제4조7항)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수요자의 입장에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며,
 - ③ 대다수의 고등교육기관들이 학기 단위의 등록금제를 채택함으로써 갖고 있는 문제 즉, 교육수요자의 과도한 부담 등을 문제가 있음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첫째,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 및 정책적 논의를 정리하고, 둘째, 특히 등록금의 범위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으며, 셋째, 등록금의 책정방법과 원가모형에 대한 논의와 함께, 넷째, 학점당 등록금제를 위한 원가 산정을 해 보았음. 이를 바탕으로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가능성 및 계절학기 초과학기 제도개선을 위한 논의를 하였음.
- 본 연구 범위와 관련하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몇 가지 제한이 있음. 첫째, 본 연구는 4년제 대학의 등록금 제도에 대한 연구임. 둘째, 본 연구에서 활용한 등록금 원가 분석 자료는 국립대학교의 것이기 때문에 원가분석 결과 해석에 있어서 국립대학의 재정 특성을 반영한 연구 결과의 해석이 필요함. 마지막으로, 원가(cost)와 가격(price)의 차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함.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것은 대학

의 원가를 분석한 것이지 가격 즉 등록금을 분석하고 있지 않음. 즉 대학의 교육 원가와 대학의 서비스 가격 즉 등록금 간에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음.

II. 등록금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정책 변화

1. 대학등록금의 의의 및 범위

□ 대학등록금의 의의

- 대학등록금은 교육기관이 제공하는 교육프로그램의 수혜자인 학생들이 반대급부로 납부하는 금전적 형태의 지불금액을 의미.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은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의 의미

- 수업료: 수업료에 계절학기, 초과학기 수업료 포함
- 입학금: 「고등교육법」 제11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 그 밖의 납부금에 포함시켜 해석하거나 법 개정을 통하여 명시
- 기성회비: 사립대학은 폐지, 국립대학은 소송중임

2. 대학등록금의 특징과 관점

- 대학 등록금의 특징으로는 첫째, 교육시장에서 자유스럽게 결정되지 않음. 둘째, 등록금의 지출은 지출된 분야에 대해 1대 1의 대응이 어려움. 셋째, 등록금의 인상은 학생수의 감소를 가져오지 않음
- 대학등록금의 관점으로는 생산비용의 관점, 사용비용의 관점, 유지비용의 관점, 합의비용의 관점, 목적비용의 관점, 미래환원비용의 관점, 부가가치비용 관점이 있음.

3. 우리나라 대학 등록금 정책의 변화

□ 등록금 자율화 이전 시기

- 1962년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행되면서 대학교육 부문에서도 과거의 자유방임적인 정책이 국가의 강력한 계획과 통제 하에 놓이게 되었고, 난립되었

던 대학을 정비하기 위해 대학정원의 결정 및 통제권을 전적으로 국가가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

- 1980년대 들어서 전두환 정부의 등록금 정책은 초기에는 대학의 입장을 적극 수용하여 고 등록금 정책을 추진하다가 정권이 안정된 후에는 물가억제의 필요성을 내세워 저 등록금 정책으로 전환

□ 등록금 자율화 시기

- 1980년대말 노태우 정부는 대학교육정책도 민주화, 자율화, 개방화의 방향으로 전환. 당시 문교부는 등록금 책정에 있어 단계적 자율화 방안을 제시하여 1988년부터는 사립대학 대학원부터 등록금 책정을 자율화하였고, 1992년 이후에는 국·공·사립 모든 대학이 학부와 대학원의 등록금을 자율적으로 책정
- 참여정부에서도 이전과 마찬가지로 대학 등록금 책정 자율화 정책을 적용해 왔으나, 등록금 문제가 대학사회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정부 의제화하였고, 이에 따라 등록금과 관련된 종합적인 대응방안을 모색

□ 반값등록금 시기

- 2006년 지방선거를 한 달 정도 앞두고 이주호 당시 한나라당 정책조정위원장이 등록금 부담을 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발언한 것이 반값등록금의 시발점이 되었으며 2012년 총선과 대선의 중요한 이슈로 발전
 - 황우여가 원내대표로 당선된 이후인 2011년 5월 22일 한나라당은 ‘무상·반값 등록금’제도를 추진. 2011년 6월 24일 한나라당 지도부는 3년간 재정 6조 8천억 원, 대학장학금 1조 5,000억 원을 투입하여 2014년까지 등록금을 최대 30% 이상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 2011년 7월 21일 한나라당은 반값등록금에 대한 입장을 선회하여 당초 일괄적으로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에서 소득하위 70%에 한하여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으로 당의 입장을 변경
 - 2012년 대선 기간에 당시 박근혜 후보는 한나라당의 반값등록금 대선공약을 제시. 대학생 모두에게 반값등록금을 동일하게 지원하는 것은 아니고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을 8분위까지 확대하여 등록금의 평균 부담을 절반으로 줄이는 정책을 제시
- 민주당은 2011년 1월 채택한 당론에서 ‘3무 1반’ 관련 등록금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고 이후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명목 등록금의 반값등록금을 발표
 - 민주당은 원래 하위 계층에 한하여 등록금을 50%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단계적으로 입장을 변경. 2011년 6월 초부터는 중산층까지 등록금을

낮추는 방향으로 선회. 이후 민주당은 다시 입장을 바꾸어 2012년 1학기부터 등록금 고지서상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는 정책을 당론으로 채택. 민주당은 사학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피력하며 반값등록금의 시행을 위하여 사학법 개정을 논의.

- 민주당은 2012년 총선을 앞두고 창조형 복지국가 실현을 위한 보편적 복지 구상과 정책과제 발표에서 반값등록금에 대한 정책을 언급. 대학등록금 수준을 부담액 기준으로 50%까지 인하하고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할 것을 발표. 2012년 대선에서 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반값등록금 추진을 위한 공약 제시
- 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2012년 12월 새해 예산안 처리 시 반값등록금 공약 관련 예산을 일부 반영하면서 2013년 초에 예산이 추가 투입
 - 애초에 정부는 등록금부담 완화를 위해 2013년 ‘반값등록금’ 예산을 2012년보다 5000억원 늘어난 2조 2,500억원으로 산정하였으나 올 해(2013년) 초 기존의 예산보다도 5,250억원 늘어난 2조 7,750억원의 예산을 국회에서 통과시킴.
 - 하지만 2013년 9월 26일 정부에서 발표된 2014년 예산안에서 반값등록금의 전면시행이 연기되고 시행 일정도 재조정. 예산부족으로 인하여 8,150억 원이 적게 반영되면서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의 완성은 2015년으로 연기하는 것으로 일정이 조정

Ⅲ. 등록금의 범위에 관한 논의와 현황분석

1. 대학등록금에 대한 입법논쟁

□ 등록금의 범위에 대한 법안

현행	박홍근의원안	유은혜의원안	정진후의원안	강창일의원안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한다)와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수업료와 입학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입학금, 시간제 등록금 등 명칭을 불문하고 학생이 학교에 납부하는 일체의 금원을 포함한다. 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	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심의위원회) ① ----- 수업료(계절학기 수업료를 포함한다)와 입학금 및 그 밖의 납부금(이하 "등록금"이라 한다) -----.

□ 등록금 상한제

한명숙의원안	안민석의원안	정진후의원안	이상민의원안
<p>① 등록금표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을 계열별로 정하여 공표함.</p> <p>② 등록금표준액은 전공계열 별 학부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표준액의 1.2배를 초과해서는 안됨.</p> <p>③ 등록금표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p> <p>④ 승인받은 계획을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용자금 회수 등을 명할 수 있음.</p> <p>⑤ 중앙등록금채정위원회의 설치</p>	<p>① 등록금기준액과 등록금 상한액을 계열별로 정하여 공표함.</p> <p>② 등록금기준액은 4인가구 최저생계비의 3배 이내로 하고, 등록금상한액은 등록금표준액의 1.2배(자연과학계열, 공학계열, 의학계열의 경우 2배)를 초과해서는 안됨.</p> <p>③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징수하고자 할 경우 교과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p> <p>④ 승인받은 계획을 위반할 경우 국고보조금 환수,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용자금 회수 등을 명할 수 있음.</p> <p>⑤ 중앙등록금채정위원회의 설치</p> <p>⑥ 가구소득을 고려한 등록금의 차등부과제 도입</p>	<p>① 등록금이 등록금 기준액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p> <p>② 등록금기준액은 전년도 전국가구 월평균소득액을 초과하지 않아야 함.</p> <p>③ 등록금기준액을 초과하여 등록금 징수시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p>	<p>① 등록금 인상이 직전 3개년도 평균 물가상승율을 넘지 못하도록 함.</p> <p>② 등록금 인상이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상승율을 넘어설 경우 해당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제재</p>

□ 학점당 등록금제

현 행	백재현의원안	우원식의원안	정호준의원안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p> <p>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받을 수 있다.</p> <p><u>〈후단 신설〉</u></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p> <p>①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여야 한다.</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p> <p>① _____ _____ _____. 이 경우 등록금은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의 경우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다.</p>	<p>제11조(등록금 및 등록금 심의위원회)</p> <p>① 학교의 설립자·경영자는 수업료와 그 밖의 납부금을 신청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받을 수 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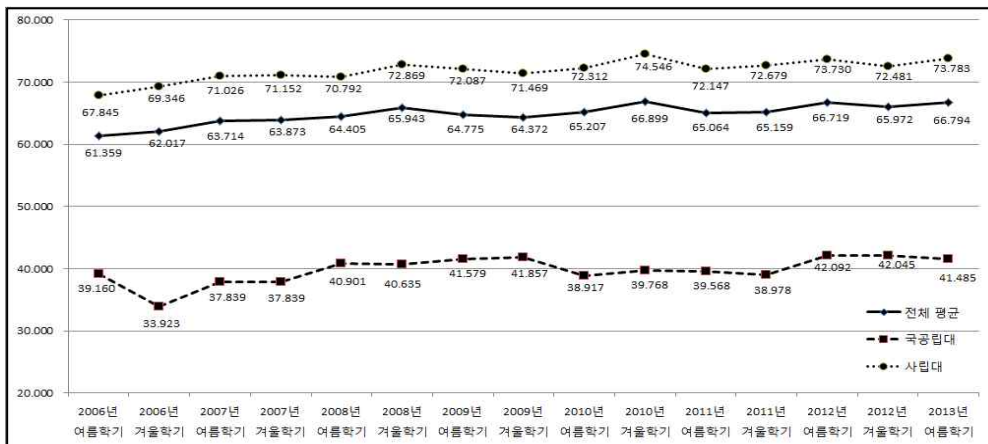
2.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분석

□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분석 배경과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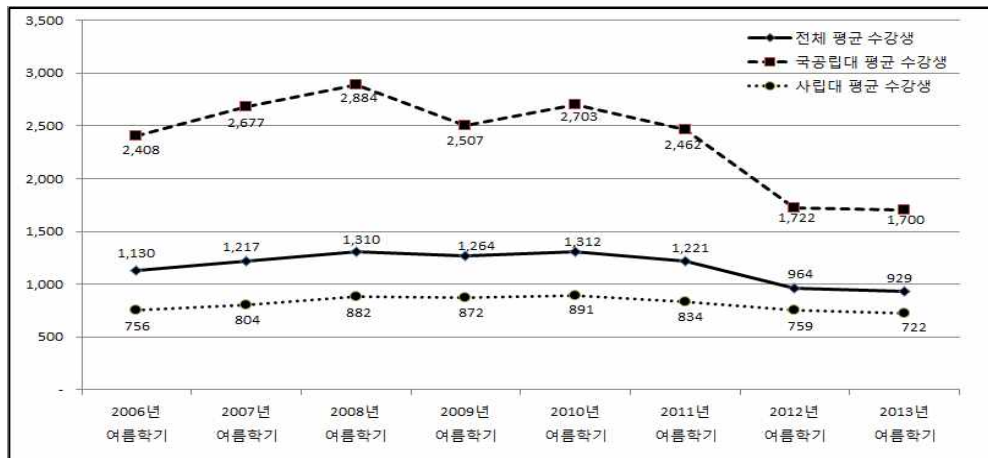
- 2011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계절학기를 등록하지 않은 학생 중 62.1%가 “비용이 부담스러워 수강하지 못한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계절학기를 수강한 학생 중에서도 대다수 학생(91.2%)이 계절학기 수업료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06년 여름학기부터 2013년 여름학기까지의 대학별 계절학기 수업료, 계절학기 총 수강인원, 계절학기 총수입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 설립주체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연도별 평균을 구함

□ 계절학기 수업료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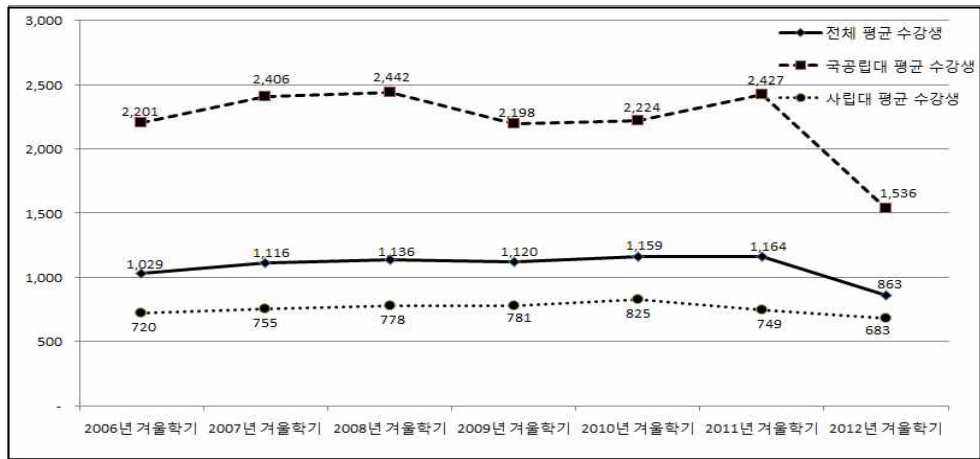
- 1학점 당 계절학기 수업료 평균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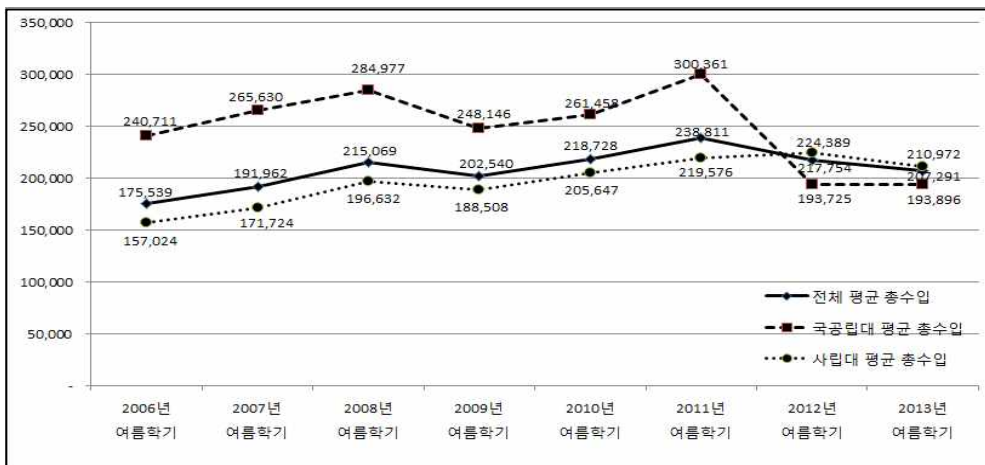
- 여름학기 평균 수강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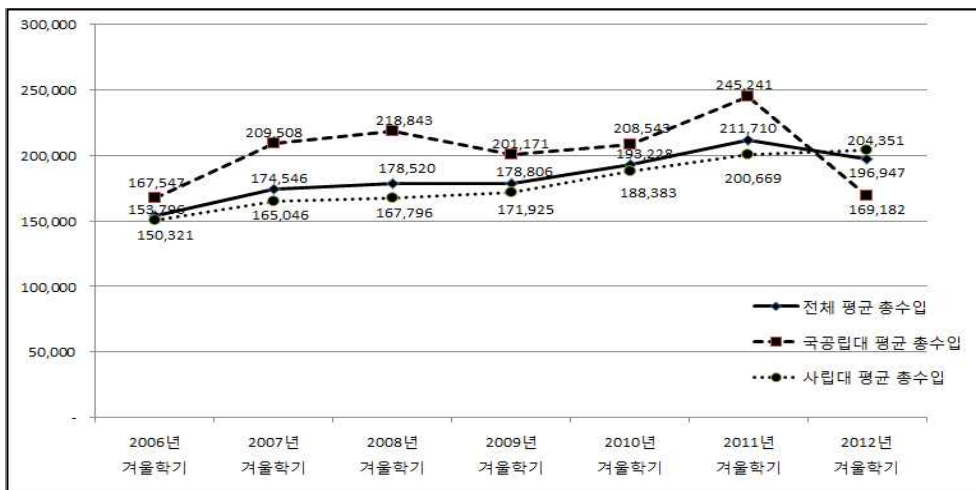
○ 겨울학기 평균 수강생



○ 여름학기 평균 총수입



○ 겨울학기 평균 총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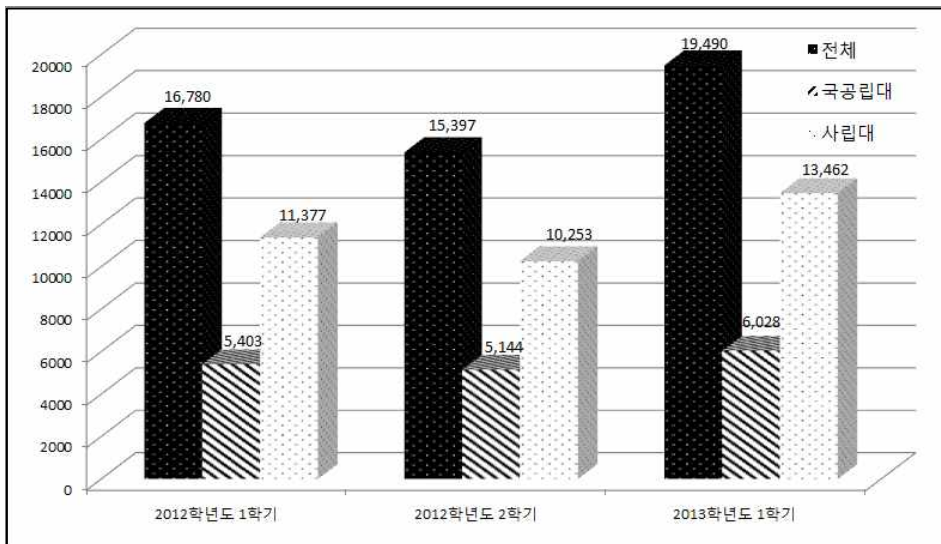
3. 초과학기 수업료 현황 분석

□ 초과학기 현황 분석 배경과 분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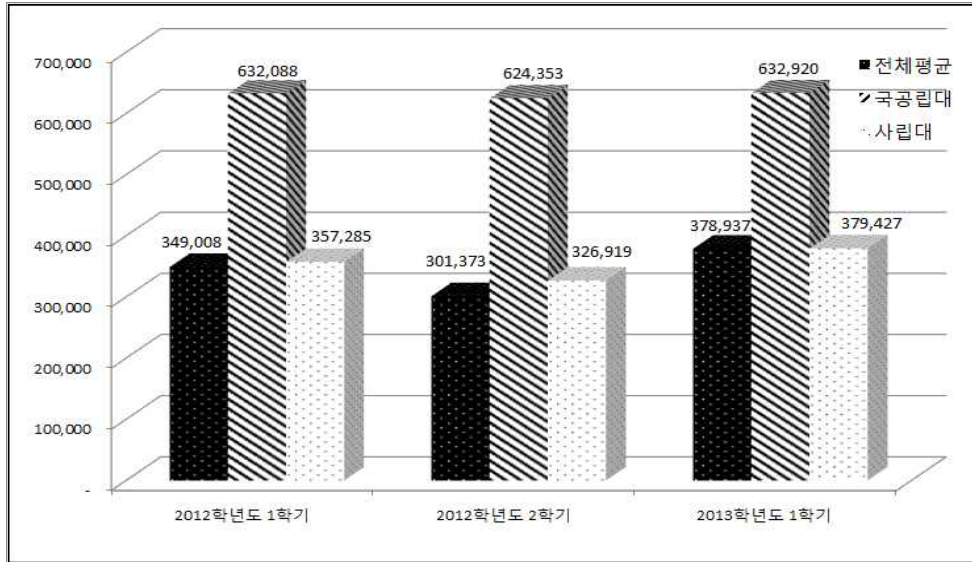
- 2014년 설문조사에 의하면 대학을 다니고 있거나 대학을 졸업한 취업준비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3.2%가 ‘졸업유예를 한 경험이 있거나 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고 하며, 졸업을 유예하는 이유로는 부족한 스펙을 쌓기 위해서(50.8%)가 가장 많았고, 막연한 불안감 때문에(46.1%), 기업이 졸업생을 기피해서(45.3%) 등이 꼽힐 정도로 취업한파로 인한 초과학기를 다니고 있는 대학생들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우리나라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의 초과학기 수업료 현황을 분석하기 위해서 2012년 1학기부터 2013년 1학기까지의 대학별 초과학기 총 등록생수, 초과학기 총수입의 자료를 사용하여, 국공립대학과 사립대학 등 설립주체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서 학기별 평균을 구함

□ 초과학기 수업료 현황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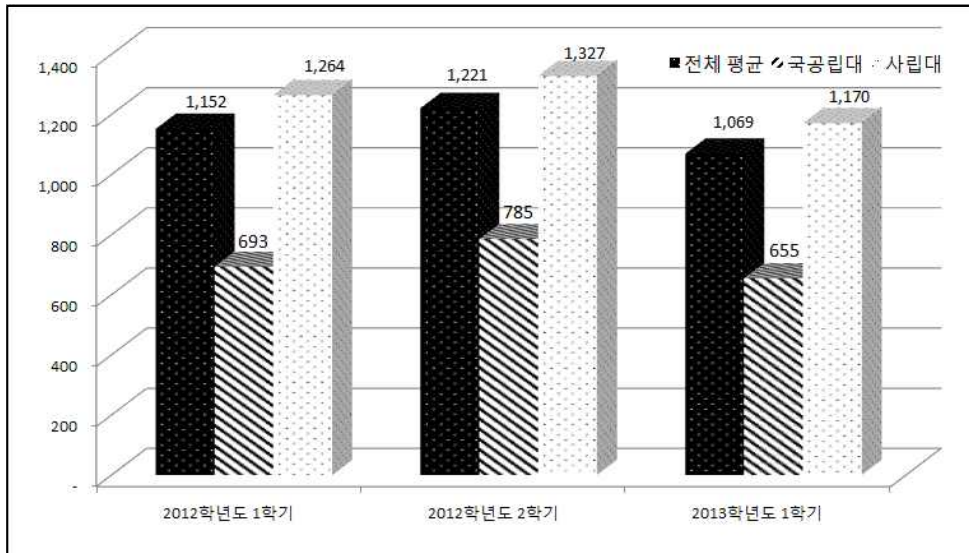
- 초과학기 등록생 수



○ 초과학기 수업료 평균 수입(단위: 천원)



○ 1인당 초과학기 평균 수업료(단위: 천원)



IV. 등록금 책정방법 및 원가모형

1. 등록금 책정 기준

□ 등록금 책정 기준

- 학기와 학점을 기준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음.

단위	주요 특징	장점	단점	예시
학기	학기당 동일한 등록금 부담	계열 별 차이 반영	수강 학점 수 반영 어려움	일반대학
학점	학점 수당 등록금 부담	수강 학점 수 반영	계열별 차이 반영 어려움	사이버대학

2. 대학의 교육원가 산정 방법과 쟁점

□ 대학교육원가의 개념

- 대학교육원가는 통상 대학의 교육목적과 대학의 운영 및 유지에 필요한 제반자원을 획득하는데 소요되는 화폐지급액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기회비용(opportunity cost)의 개념을 원가개념에 반영하여 대학교육을 위해 투입한 노동, 자본, 토지 등의 자원을 대안에 투자하였더라면 실현할 수 있었을 효익의 포기로도 대학교육원가를 이해할 수 있음
- 그러나 대학의 교육에 대한 기회원가는 현실적으로 측정하기가 불가능하며 대학교육에 투입되는 자원의 양을 모두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님

□ 대학교육원가의 특성

- 일반적으로 교육원가의 가장 큰 특징은 교육서비스의 특성상 노동집약적인 활동이므로 인건비가 큰 비중을 차지하며, 대부분의 우리나라 대학은 교육원가중 인건비가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Coombs & Hallak(1972)도 대학의 교육원가란 대학이 교육활동을 위하여 소비한 제반 경제적 가치라고 하면서 인건비의 비중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교육원가 측정시 인건비 배분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주장

□ 대학교육원가분석의 선행 연구

- 이정호·곽수근(1991)은 서울대학교의 교육원가분석에 관한 연구에서 체계적인 모형을 제시하였다. 상기 모형에서는 교육원가의 분석 목적은 대학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다고 적시하고, 1, 2, 3차 교육원가집적단위를 결정
- 정준수 외(1996)은 부산대학교 교육원가 산정 모형을 기존 선행연구를 고찰하여 교육원가의 개념과 특정 및 교육원가분석의 개념적 틀을 제시. 이들은 대학의 조직구도에 따라 원가를 집적하지 않고 교육기능별로 원가를 집적
- 정명환 외(1996)은 경성대학교 분석에서 교육원가도 이용하는 목적에 따라 적절한 원가개념이 필요하며, 목적에 적절치 못한 원가개념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잘못된 판단과 의사결정을 유도할 수 있다며, 교육의 목적활동에 따라 강의원가와 지원원가, 현금지출여부와 그 효용의 기간에 따라 지출원가와 기회원가, 실제로 발생한 것과 기준에 맞춘 경우의 원가를 실제원가와 기준원가로 정의
- 심충진(2002)는 교육비원가를 등록금원가보다 상위개념으로 보아야 할 것을 판단하여 대학의 교육비원가와 등록금원가의 구분을 시도하고, 1인당 교육비원가보다 학점당 등록금원가의 산정방법을 제시

□ 선행연구의 한계점

- 분석모형에 사용하는 교육비 중 인건비를 각 단과대학과 대학원별로 집적할 때 평균인건비를 사용하느냐, 실제로 발생한 인건비를 집적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교육원가의 분류가 일치하지 아니하여, 교육원가의 분류는 어떠한 목적으로 원가를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각기 달라질 것임
- 대부분의 의과대학은 부속병원 혹은 협력병원을 함께 운영하기 때문에 임상을 주로 담당하는 교수들이 많기 때문에 의과대학의 교육비분석에는 별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학전산회계시스템은 대체로 외부보고를 위주로 설계되었으며, 관리 목적의 회계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은 별로 기울이지 아니한 것으로 사료되기에 분석에 주의를 기울여야 함

□ 대학교육원가 산정의 쟁점: 대학교육원가의 범위

- 본 연구에서는 급여성이 아닌 교수의 연구비로 정책연구비, 정착연구비, 장기

및 단기 교수 해외파견 지원비 등은 교육활동에 간접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 판단되므로 전액 교육원가에 산입

- 본부의 연구지원부서와 대학의 법정연구소는 종합대학이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마땅히 갖추어야 할 대학기구이므로 이들 기관에서 발생한 원가는 전액 교육원가에 산입
 - 외부용역과 관련된 연구비는 외부기관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외부수탁연구비는 교육원가에서 제외
 - 교외활동원가는 학생들이 부담하는 교육원가와와는 무관하므로 교육원가에서 제외
 - 연구년 급여는 모든 교수가 일정 자격요건을 갖추면 받게 되는 수혜로 보아 급여로 간주해 교육원가로 분류
- 대학교육원가 산정의 쟁점: 강의 인건비의 상호배부와 표준화
- ‘강의 인건비’는 전임교수와 특임교수(석좌교수, 연구교수, 겸임교수, 초빙교수, 산학협력 교수 등), 시간강사 인건비로 구성됨
 - ‘강의지원 인건비’는 행정담당의 일반직원, 보조활동을 하는 직원(조교) 및 특수직(별정직 및 교육전문직)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로 구성됨
 - 인건비 분류에 있어 근로에 대한 보수로서 지급되는 항목은 모두 인건비에 포함시키며 인건비의 성격을 가진 연금지급금과 의료보험부담금, 퇴직금 등도 인건비에 포함
 - 본 연구에서도 교수 1인당 표준인건비를 적용함
- 대학교육원가 산정의 쟁점: 고정자산의 감가상각
- 본 연구에서는 고정자산 시설투자에 따른 지출은 정액법에 따른 감가상각방법을 사용
 - 감가상각시 오래전에 취득한 건물 구입가액을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게 되면 교육원가가 과소계상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므로, 원가정보의 목적적합성을 보완하기 위해 최근에 취득한 건물을 기준으로 대체원가를 계산하여 그 가액으로 감가상각비를 계산
- 대학교육원가 산정의 쟁점: 간접원가의 배부기준
- 교육원가는 간접원가 비중이 직접원가 보다 대체로 더 높아 간접원가의 배부

오차가 교육원가 산정에 상당한 왜곡을 가져올 수 있음

- 선행연구에서는 인과관계의 개념 하에 실무적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한 두 개의 배부기준을 선정하여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그 중 가장 많이 활용하는 간접원가 배부기준이 ‘소속 학생수’임
- 하지만 복수전공, 부전공 등 교차수강이 보편화되어 있는 최근의 학사제도하에서는 ‘수강학생수’가 ‘소속학생수’ 보다 합리적일 수 있는 간접원가 배부기준이 될 수 있음

3. 대학의 교육원가 분석모형

□ 원가산정방법의 선택

- 원가산정방법은 크게 개별원가계산과 종합원가계산 그리고 양자의 복합형태인 작업별원가계산 등이 있음
- 원가계산은 그 대학의 성격 및 원가계산의 목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어떠한 원가계산방법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유용한 정보를 생산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하나의 정답이 있을 수 없음

□ 분석 모형 설계 방향

- 본 연구에서 교육원가는 크게 인건비, 운영비, 그리고 고정자산(건물, 집기비품, 기계기구 등)의 감가상각비로 분류
- 학교부지의 사용원가는 교육원가의 범주에서 제외하고, 수강학생 1인의 기준 3학점당 단위교육원가 및 소속학생 1인당 교육원가를 산정
- 소속학생 1인당 교육원가를 산정시에는 학생들의 교차수강 Matrix를 작성하여 교수인건비를 배분한다.
- 교육원가는 학부별로 집계하여 산정하며, 학부원가는 학부와 대학원교육원가로 구분되며, 교육원가에는 직접교육원가와 간접교육원가가로 구분할 수 있음
- 직접원가는 전공별로 쉽게 추적이 가능한 원가로서 교수인건비(시간강사 포함), 장학금/학비감면, 실험실습비, 감가상각비 등이 이에 해당함
- 간접원가의 주요 항목은 건물, 기계기구 및 집기비품 감가상각비, 본부직원 인건비, 공통실험실습비, 본부관리운영비 등임.
- 본 연구에서는 수강학생 1인의 기준 3학점당 단위교육원가 및 소속학생 1인당

V. 학점당 등록금제를 위한 원가 산정

1. 정규학기 학점당 등록금 원가 산정 모형

□ 등록금 책정 단위에 대한 논의

- Grabowski(1981)는 전공 또는 프로그램별 등록금제(stratified pricing), 학기별 등록금제(semesterpricing), 학점별 등록금제(unit pricing), 변인별 등록금제(variablepricing), 비례등록금제(scaled pricing), 이분화된 등록금제(two-partpricing)를 제시
- 우리나라에서는 김병주(2000)가 교육비에 근거하여 학기 혹은 학점을 단위로 등록금을 부과할 수 있음을 언급

□ 등록금 원가 산정 방식

- 학생 1인당 교육원가의 산정
- 학점당 교육원가의 산정

□ 학점당 등록금 원가분석 모형 적용 방법

- 총교육원가의 집계: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토지의 기회비용 및 교육과 관련없이 발생한 비교육원가는 제외
- 직접교육원가와 간접교육원가의 구분 집계
 - 직접교육원가: 인건비, 운영비, 감가상각비를 학교 편제에 맞추어 직접 대응시킬 수 있는 교육원가
 - 간접교육원가: 직접교육원가 이외의 직접 대응이 어려운 교육원가
- 인건비의 배분
 - 교원인건비를 전임과 강사로 나누고 전임총인건비, 강사총인건비를 각각 총수업시수로 나누어 수업시수당 전임단위인건비, 강사 단위인건비를 구함
 - 교원의 인건비는 평균인건비의 개념으로 인건비를 배분하는 것이 일반적
 - 대학원이 있는 대학의 경우 소속 교원의 인건비를 학부와 대학원으로 배분
- 실험실습비 및 운영비의 배분: 간접원가를 제외한 직접원가 개념의 실험실습비 및 운영비는 소속 학과 또는 대학원에 직접 배분

- 단과대학 공통원가의 배분
 - 직접 학과 또는 대학원에 대응이 어렵고 상위 단과대학에 모이는 직접원가가 존재함
 - 이러한 원가는 배분기준(학과별 정원 등)을 정하여 하위 학과에 배분
 - 감가상각비의 배분: 정액법 사용
 - 대학본부 원가 및 간접원가의 배분
 - 대학총장의 인건비, 도서관 감가상각비 등은 대표적인 간접원가라고 할 수 있으며, 간접원가의 학과 배분시 원가의 배분기준을 정하여야 함
 - 배분기준은 학과별 발생 학점수, 편제정원, 재학생수, 교원의 수, 면적 등 여러 가지가 사용될 수 있으며 간접원가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적용할 수 있음
- 학점당 원가분석 모형의 적용
- 분석대상: 2009년도 국립 A 대학교(4년제)
 - 학점별 원가 산정결과
 - 가정: 편제정원과 재학생수 일치함. 졸업학점수 140학점이고 교양 25%, 전공 75% 수강하여야 함. 재학생 1명이 1년에 수강하는 학점은 35학점 가정. 초과학기 및 계절학기 수강생 없음
 - 분석결과 교육직접원가는 강의인건비, 실험실습비, 학과조교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강의인건비가 직접원가의 89%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1학점당 직접원가는 학과별 단순평균 124천원, 가중평균 103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학과당 1학점당 직접원가 구간은 39천원에서 222천원으로 분석됨
 - 교양과정의 경우 교원에 비해 강사비율(80%)이 월등히 높아 학점당 직접원가가 가장 낮게 분석됨
 - 교양과정을 제외할 경우 전공과정의 1학점당 직접원가 구간은 78천원~222천원임
 - 학점당 직접원가는 학생수 대비 전임교원의 수의 많고 적음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정원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전임교원의 수가 많은 경영정보학과가 가장 높게 분석되었고, 반대로 학생수에 비해 전임교원의 수가 적은 건축공학과가 가장 낮게 나타남
 - 1학점당 원가 분석결과 1학점당 간접원가는 평균 185천원이며 구간은 167천

원~222천원으로 분석됨

- 최종 1학점당 원가는 교양과정이 205천원, 공과대학이 264천원~392천원, 첨단과학기술대학이 268천원~392천원, 인문사회예술대학이 267천원~410천원, 보건생명항공대학 301천원~367천원으로 분석되었으며, 교양과정을 제외한 1학점당 가중평균 학점원가는 316천원으로 계상됨
- 교양과정을 제외하면 전공학점 1인당 학점 가중평균값인 316천원에서 학과별 학점당 원가는 (-)15%~(+)30%내에 분포하고 있으며, 학교의 특성상 증대한 학점당 원가 차이는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수준임

□ 학점당 원가분석 모형의 등록금 적용

○ 학점당 원가 적용 단위

- 학과, 학부, 단대, 계열 등 여러 가지 단위가 있겠지만, 최소 학부나 단대 단위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학기당 이수 학점 범위의 결정

- 학점당 등록금제를 현실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학기당 이수할 수 있는 최소 학점과 최대학점의 범위를 결정하여야 하는데 이에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
- 1학점당 계산된 교육원가를 기준으로 신청 학점수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등록금 산정하는 방법
- 교육간접원가를 재학생수에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배분 후, 1학점당 계산된 교육직접원가를 기준으로 신청 학점수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등록금 산정하는 방법

○ 재학생의 수강 성향 분석

- 학점당 등록금제 하에서는 학생들의 수강 성향 및 추이를 파악하여야 등록금 예산을 파악할 수 있을 것임

2. 계절학기 학점당 등록금 원가 산정 모형

□ 계절학기 직접원가 부담 방식

- 계절학기에 발생하는 직접원가(강의 인건비 등)만 반영하여 계절학기 학점당 원가를 산정하자는 원가모형
- 학교에서 발생하는 간접원가는 계절학기 수강자들이 부담하지 않고 일반학기(초과학기 등록자 포함)등록자들이 100% 부담하는 모형

- 일반학과와 계절학과 간접원가 균등 부담 방식
 - 계절학과가 일반학과의 보충적인 과정이 아니라 정식 과정이라는 주장
 - 간접원가 역시 일반학과와 마찬가지로 부담하여야 하는 방식
- 일반학과와 계절학과 간접원가 가중치 부담 방식
 - 상기 상식을 혼합한 모형
 - 실제 적용시에는 계절학과 수강자 추정이 필요함

3. 초과학과 학점당 등록금 원가 산정 모형

- 초과학과 직접원가 부담 방식
 - 초과학과에 발생하는 직접원가(강의 인건비 등)만 반영하여 초과학과 학점당 원가를 산정하자는 원가모형
 - 학교에서 발생하는 간접원가는 초과학과 수강자들이 부담하지 않고 일반학과 등록자들이 100% 부담하는 모형
- 일반 학과와 초과 학과 간접원가 균등 부담 방식
 - 일반학과와 초과학과 구분 없이 1학점당 간접원가를 균등하게 부담시키자는 모형
 - 초과학과가 정식 과정이므로 간접원가 역시 일반학과와 마찬가지로 부담하여야 하는 방식
- 일반학과와 초과학과 간접원가 가중치 부담방식
 - 상기 방식을 혼합한 모형으로 초과학과 신청자에 대해 학점당 원가산정시 간접 원가에 대해 가중치를 두는 방식

VI. 등록금 범위 및 책정에 관한 쟁점과 개선과제

1. 학점당 등록금제를 위한 논의

- 대학의 등록금 제도는 학기당 고정액으로 등록금을 결정하는 방식과 학점당 등록금을 기준으로 하여 총액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3가지의 등록금 제도로 나눌 수 있음.
 - ① 학기중심 등록금 제도 (1)
 - ② 학기중심 등록금 제도(2)

③ 학점단위 등록금 산정 방식

□ 학점당 등록금 산정 방식 타당성 논의

○ 기존 등록금 산정 방식의 문제점

- 학생이 실제로 수강하는 학점과 관계없이 동일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 수강 신청한 학점수를 반영하지 못함
- 아울러 등록금 반값 논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립대학의 경우 재단의 기여 부분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고, 등록금 책정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문제도 지적되어 있음

□ 학점당 등록금 산정 방식의 우월성

- 교육원가에 근거한 등록금의 결정은 전공별, 학년별, 또는 과정별 교육원가를 분석하고, 이에 근거하여 등록금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함. 학점당 등록금 산정 방식은 교육원가에 근거한 등록금 산정방식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음

□ 학점당 등록금 산정방식의 수용성 논의 필요

- 학점당 등록금 산정방식의 제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있는 이해관계자들의 수용성이 확보되어야 함. 즉 대학과 재단,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사회의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러한 학점당 등록금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함

□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를 위한 법안 및 규정 변경

- 현행 법령에서는 대학등록금은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기별로 등록금을 징수하고 있어 등록금에 대한 가계 부담이 심각하여 등록금 징수방법의 합리적 개선이 필요함.
- 현행 「대학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서 등록금은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점별·학기별 또는 월별로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들은 등록금 징수방법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면서 등록금을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도록 하거나, “신청 학점별로 징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외를 규정하고 있음.

□ 학점당 등록금제 실시에 따른 영향:

- 분석결과를 해석함에 있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음. 먼저 분석 결과는 국립대학 A의 사례에 따른 것임. 등록금과 원가 간에는 차이(gap)가 존재함. 즉 대학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정부의 보조금, 재단의 전입금 혹은 여타 수입의 비중에 따라서 차이의 크기가 달라짐

2. 계절학기 초과학기 등록금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

□ 계절학기, 초과학기 등록금 제도 변화의 대안에 대한 논의

- 등록금과 동등하게 취급하는 방안
 - 정규학기 등록금 산정 방식의 적용
 - 등록금 심의위원회의 의결 대상이 됨.
 - 전체적인 등록금의 수준의 변화 예측 필요
 - 초과학기/계절학기 등록금 수준의 인상 혹은 인하 예측
 - 등록금에 편입하기 위한 조건이 필요함: 계절학기의 활성화(학교 및 교수에 대한 인센티브 논의 포함), 학점당 등록금제의 활성화 등
 - 학교, 학생 및 학부모, 기타 이해관계자의 입장에 대한 청취가 필요함
- 등록금과 별도로 산정하는 방안
 - 등록금 심의위원회에서 논의되지 않음.
 - 초과학기/계절학기 수업료 산정 방식의 투명성 문제가 남게 됨.
 - 초과학기/계절학기 수업료의 인상에 대한 통제 필요성
 - 학교의 입장, 학생 및 학부모의 입장에 대한 청취가 필요함